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협회는 "미술등록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협회는 미술저작권과 소유권 등기(등록) 및 국내외 미술경매, 국세물납, 권원보험을 널리 정착시키고 발전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협회의 주사무소는 서울시에 두고 지부(支部)는 국내에 둔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미술저작권과 소유권 등기(등록) 및 미술경매, 국세물납과 권원보험 관계자 인적 교류활동
2. 미술저작권과 소유권 등기(등록) 및 미술경매, 국세물납과 권원보험 연구 및 학술활동
3. 미술저작권과 소유권 등기(등록) 및 권원 분석 현황 조사활동
4. 미술저작권과 소유권 등기(등록) 및 미술경매, 국세물납과 권원보험 교육과 지도육성
5. 회원 상부상조
6. 기관지 발간
7. 미술저작권과 소유권 등기(등록) 및 미술경매, 국세물납과 권원보험 관련 자격제도 운영
8. 의료 활동 후원 및 장학사업과 국제학교 건립지원 사업
9. 동산·채권 등의 담보 및 지식재산기본권과 금융업체 연계에 관한 사항
10. 이 협회 목적에 부합하는 수익사업(신규 영리법인 설립)
11.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와 입회비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이 협회의 발전을 위해 명예회원 및 명예임원을 둘 수 있다.
- ③ 회원(명예 등)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협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협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2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대표 1인
3. 상임고문 1인
4. 부회장 10인 이내
5. 이사 1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6. 감사 2인 이내

제10조(임원의 선임)

-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그 외 임원은 회장이 총회에서 위임받아 지명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② 제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장과 대표 권한으로 당연직 이사를 둔다.
-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상임이사)

- ① 본 협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대표와 협의하여 선임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대표는 회장을 협력하여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회장과 대표의 지시를 받아 협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과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 대표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5조(총회의 구성)

- ① 총회는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회원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 회원으로 총회의 구성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시 이사회의 의결로 대의원을 구성하고 대의원이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이 된다.
- ② 대의원 구성은 협회의 이사, 감사와 협회 각 지부에서 2인씩 선출하여 구성한다.

제1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대표와 협의하여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과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 2인이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부회장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협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 대표,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이사회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 및 차입금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 대표가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서면결의)

- ① 회장과 대표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표는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과 대표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6조(재산의 구분)

- ① 협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협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7조(재산의 관리)

- ①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재원)

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제29조(회계 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예산편성 및 결산)

- ① 협회는 회계연도 1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협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1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국

제33조(사무국)

- ① 사무국 업무결제는 회장과 대표의 지시를 받고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4조(해산)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잔여재산 처리)

이 협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37조(공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8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미술등록사, 작가회원, 화랑 회원, 금융기관(대부업체 포함) 회원 등 기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미술등록사 자격은 법무사에 준하는 자격(휴업 법무사, 폐업 법무사, 집행관 포함)을 가진 자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미술등록사업에 공헌이 큰 자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